	재 무	표준번호	SJM-C-6000
	공시정보관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	2 / 3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본규정 부표 제1호 내지 제2호)를 말한다.

②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③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④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⑤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단,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적시공시가 불가능 할 시에는 재무담당이사가 공시책임자의 모든 권한으로 공시를 실행할 수 있다.

⑥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⑦ “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⑨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⑩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⑪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품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재 무	표준번호	SJM-C-6000
	공시정보관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	3 / 36

⑫“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 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⑬“발행 및 특수공시”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0-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⑭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4조(대표이사)


- ①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②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책임,보고체계의 수립
 3. 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최종 점검 및 운영성과의 최종 평가
 4.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공시책임자)

- ①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 ②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5.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7.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등의 승인
 9.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공시담당부서)

- ①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재 무	표준번호	SJM-C-6000
	공시정보관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	4 / 36

②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4. 공시관련 법규의 제정,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가 필요 할 시 이에 관한 업무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부서)

- ①각 사업부서의 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본 규정 부표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 ②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1절 정기공시


제8조(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본 규정 부표 제1호에 의한다.

제9조(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의 팀장은 부표 1의 정기공시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사항의 자료제출을 공시담당부서로부터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출시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당해 자료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각 사업부서의 팀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제출시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담당부서)

- ①공시담당팀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각 사업부서에 공시자료를 요청할수 있다.
- ②공시담당팀장은 사업부서의 점검내용 및 통지내용에 의거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③공시담당자는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공시담당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공시담당팀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 무	표준번호	SJM-C-6000
	공시정보관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	5 / 36

제11조(공시책임자)

- ①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팀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공시담당팀장은 공시후에 공시내용의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수시공시

제14조(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본 규정 부표 제2호에 의한다.

제15조(사업부서)

- ①각 사업부서의 팀장은 본 규정 부표 제2호의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양식 [중요정보 발생통지서]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사업부서는 공시담당팀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팀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완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팀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공시담당팀장은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공시담당부서)

- ①공시담당자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팀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공시담당자는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담당팀장에게 보고 및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팀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공시담당자는 제1항의 검토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시담당팀장 및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공시책임자)

- ①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 ②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13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재 무	표준번호	SJM-C-6000
	공시정보관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	6 / 36

제3절 공정공시

제19조(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공시 사항 및 공시시한은 본 규정 부표 제3호에 의한다.

제20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유의사항)

①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5조 내지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4절 조회공시

제23조(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회공시 사항 및 공시시한은 본 규정 부표 제4호에 의한다.

제24조(공시담당부서)

①공시담당자는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담당팀장에게 보고 및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시담당팀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팀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팀장에게 전달하고 공시담당팀장은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공시담당자는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제13조, 제16조 제2항 단서 및 제17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7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5절 자율공시

제26조(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자율공시 사항 및 공시시한은 본 규정 부표 제5호에 의한다.

제27조(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①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팀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재 무	표준번호	SJM-C-6000
	공시정보관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	7 / 36

②공시담당팀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팀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의 팀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팀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④사업부서의 팀장은 공시담당팀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담당팀장에게 전달하고 공시담당팀장은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준용)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6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6조 및 제17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

제29조(발행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팀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각 사업부서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①제9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 제3항 중 “연간공시업무계획”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으로, 제10조 제3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②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제4장 정보 및 의사소통

제32조(정보의 수집,유지,관리)


①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당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전항의 정보를 수집,유지,관리하고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제33조(의사소통)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보고체계의 수립등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제34조(공시위험의 관리)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 무	표준번호	SJM-C-6000
	공시정보관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	8 / 36

1.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 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2.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 기재요령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 불충분성, 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 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4.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 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5. 공시사항의 누락, 은폐, 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 등에 대한 은폐, 축소를 인한 공시위험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 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내부 임직원에게 의해 선별적으로 제공되거나, 언론과의 접촉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
8.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 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제35조(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는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각 사업부서의 팀장은 당해 사업부서와 관련된 공시위험에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공시담당부서)

- ① 공시담당부서는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시위험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시담당팀장은 공시위험요소들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모니터링

제1절 일상적 모니터링


제37조(일상적 모니터링)

- ① 사업부서의 팀장 및 공시담당팀장과 공시책임자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관련업무가 공시통제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일상적 모니터링을 위해 문서의 결재, 참고자료의 제출요구, 공시정보와 관련된 직원과의 면담, 회계 또는 감사업무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제38조(주제 및 시기)

- ① 대표이사과 공시책임자는 각각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필요시 당사의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②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사업보고서 제출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재 무	표준번호	SJM-C-6000
	공시정보관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	9 / 36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절차)

① 각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체 평가내용을 포함한 부서별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전조 제2항의 기간 내에서 공시책임자가 정하는 날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각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감사, 내부감사팀,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③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가 보고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제40조(방법 및 고려사항)

①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보의 생성, 전달 등 공시절차에 관여한 자와의 면담, 관련 문서 검토,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의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전에 수행되었던 점검과 평가 이후 공시통제제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당사가 설계,운영하고 있는 공시통제제도가 지속적이며 정확한 정보의 생산 및 공시위험의 감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3.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부적법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4. 재무 및 비재무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
5. 당사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6. 당사의 공시통제과정에서 모든 관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7. 이전에 발생한 공시위험 및 주요한 공시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8. 이전에 발생한 위험이 기존의 공시통제제도를 통해 회피가능하였는지 여부

③공시책임자는 전항 각호의 사항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점검표 등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통제상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7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금지

제42조(일반원칙) 당사의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거래)

①당사의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증권등을 매매 기타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정을 사전에 주식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주식담당자는 당해 매매 기타 거래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식담당팀장 및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재 무	표준번호	SJM-C-6000
	공시정보관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	10 / 36

③ 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거래 즉시 주식담당자에게 당해 거래 내역(특정증권등의 종류, 매매수량, 거래일자)을 통보하여야 하며 주식담당자는 거래내역이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점검후 공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4조(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①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공개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음식점, 비행기 또는 택시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3. 미공개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폐기시에는 분쇄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외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미공개 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 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6. 미공개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7. 미공개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는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자회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자회사, 관계회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6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①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 변경, 추진, 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② 공시담당팀장은 당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당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게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재 무	표준번호	SJM-C-6000
	공시정보관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	11 / 36

3.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8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제47조(보도자료의 배포)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제19조의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공정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9조(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팀장과 공시담당부서의 팀장은 보도자료의 배포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언론사의 취재등)

- ①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등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2. 공시책임자
 3. 재무담당임원
- ② 공시담당부서의 팀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시장풍문등

제51조(시장풍문)

- ① 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의 팀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의 팀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정보제공 요구)

-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

	재 무	표준번호	SJM-C-6000
	공시정보관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	12 / 36

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3조(기업설명회)

- ① 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등 기업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를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의 팀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 ③ 공시담당부서의 팀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4조(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 ① 각 사업부서의 팀장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49조는 본조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제9장 보 칙

제55조(교육)

- ①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의 담당자 및 공시책임자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의 팀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교육이 반드시 이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57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58조(자본시장법의 우선적용) 이 규정에서 정한 규정중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규정 및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59조(관련양식)

- (1) 중요정보 발생 통지서
- (2) 중요정보 외부제공 통지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1. 정기공시사항 및 공시시한	개정번호	0
		페이지	13 / 36

1. 목적 : 자통법, 자통법시행령, 발행공시규정, 공시규정 및 본 규정 제8조에 따른 당사의 정기보고서의 공시시한과 관련부서의 업무분장을 제시하여 기한내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2. 정기보고서의 근거법에 따른 공시시한 및 작성 관련부서의 업무
 - (1) 정기보고서의 근거법 및 공시시한은 다음표와 같다.
 - (2) 정기보고서의 작성 및 관련부서의 업무
 - 가. 정기보고서의 작성부서는 공시부서로 한다.
 - 나. 정기보고서의 세부작성에 필요한 자료 발생시 공시부서는 공시항목과 연관된 팀에 제출시한을 정하여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에서는 요청받은 자료를 정해진 시한내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 : 정기보고서 신고에 관한 사항]


신 고 및 보 고 사 항	관 계 법 규	신고보고처
1.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대표이사 및 제출업무 담당 이사의 서명 필요)	자통법 제159조 자통법시행령 제168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금융위 거래소
2. 반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대표이사 및 제출업무 담당 이사의 서명 필요)	자통법 제160조 자통법시행령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금융위 거래소
3. 분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대표이사 및 제출업무 담당 이사의 서명 필요)	자통법 제160조 자통법시행령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금융위 거래소
4.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사업연도 종료후 9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 제출.	자통법시행령 제168조 제170조 공시규정 제21조	금융위 거래소
5. 결합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은 기업집단결합 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	자통법 제159조의 공시규정 제21조	금융위 거래소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14 / 36

- 목적** : 자통법, 자통법시행령, 발행공시규정, 공시규정 및 본 규정 제14조에 따른 당사의 수시공시 및 기타 공시사항의 공시시한 및 관련부서의 업무분장을 제시하여 기한내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수시공시 및 기타공시사항의 다음에 이어지는 표와 같다.
- 소관부서** : 수시공시 및 기타 공시사항의 소관부서는 당해 공시사항의 발생시점이나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공시시한내에 공시가 이루어 지도록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양식 [중요정보 발생통지서]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정공시에 해당하는 사항의 외부제공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양식 [중요정보 외부제공 통지서]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1)영업 및 생산활동 관련 공시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 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 영업일부 및 전부의 정지, 정지처분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은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그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	공시규정 제7조①1가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영업팀
2. 영업일부, 전부의 정지, 정지처분 주요사항보고 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일 공시할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영업팀
3.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은 100분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1나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영업팀
4.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해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은 100분의 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및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	공시규정 제7조①1다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영업팀
5. 제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은 100분의 5)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을 결정한 때	공시규정 제7조①1라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영업팀
6. 생산공장의 생산활동 중단, 폐업, 재개 최근 사업연도 생산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은 100분의 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및 해당 중단, 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1마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영업팀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15 / 36

(2) 증권발행, 소각, 유가증권사고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 유상증자,무상증자,자본감소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규정 제7조①2가(1)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2. 유상증자,무상증자,자본감소 주요사항보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일 공시할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대표이사 및 제출업무 담당 이사의 서명 필요)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3. 증권신고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50인 이상, 10억 이상인 경우)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신주발행이 있는 합병, 분할(분할합병), 영업(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의 경우에도 제출)	자통법 제119조 자통법시행령 제120조 발행공시규정 제2-6조	금융위		재무관리팀
4.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됨	자통법 제123조, 제124조 발행공시규정 제2-14조	금융위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재무관리팀
5. 예비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가 수리 후 신고효력발생 전에 발행인은 예비투자설명서를 활용하여 청약의 권유등을 할 수 있음	자통법 제124조 자통법시행령 제133조 발행공시규정 제2-15조	금융위	증권신고서 수리 후 신고효력발생 전	재무관리팀
6. 간이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수리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함)를 사용하여 청약의 권유등을 할 수 있음	자통법 제124조 자통법시행령 제133조 발행공시규정 제2-15조	금융위		재무관리팀
7. 발행가액결정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공시	발행공시규정 제5-18조 제5-20조	금융위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8.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모집,매출을 완료한 때(초과배정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 옵션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발행이 완료되었거나 동 옵션의 권리행사기한 도래로 주식이 새로이 발행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 지체없이 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제출)	자통법 제128조 발행공시규정 제2-19조	금융위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9. 철회신고서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자통법 제120조 발행공시규정 제2-20조	금융위	청약일 전일까지	재무관리팀

계속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16 / 36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0. 일괄신고서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일괄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음	자통법제119조 자통법시행령 제12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금융위		재무관리팀
11. 일괄신고서추가서류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증권(집합투자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 (1)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3)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기간 및 발행예정금액 (4) 발행예정기간 중에 이미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통법 제119조 자통법시행령 제122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금융위		재무관리팀
12. 소액공모공시서류 모집,매출가액과 해당 모집,매출일부터 과거 1년간(같은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신고 후의 기간)에 이루어진 같은 종류의 증권의 모집,매출로서 모집,매출가액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출	자통법 제130조 자통법시행령 제137조 발행공시규정 제2-17조	금융위		재무관리팀
13. 소액공모실적보고서 소액공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액공모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	자통법 제130조 자통법시행령 제137조 발행공시규정 제2-17조	금융위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14. 신주권의 상장신청	상장규정 제46조 상장규정세칙 제7조	거래소	신주발행 후	재무관리팀
15. 분담금납부	자통법 제442조 자통법시행령 제388조	금융위	증권신고서 제출과 동시	재무관리팀
16.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납부	상장규정 제96조 상장규정세칙 제50조	거래소	상장신청과 동시	재무관리팀

계속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17 / 36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7. 주식예탁증권발행등 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 (1) 예탁기관과 주식예탁증권 발행에 따른 예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하거나 상장되어 있는 해외증권시장으로부터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가 있는 때 (3) 매 결산기말 주식예탁증권의 소유자 명부가 작성되었을 때 (4) (1) 내지 (3) 외에 주식예탁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때	상장규정 제57조 상장규정세칙 제32조	거래소		재무관리팀
18. 사채발행 사채발행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을 때	상장규정 제55조제2호	거래소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19. 주식관련사채(CB,BW,EB,DR)발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규정 제7조①2가(6)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20. 사채발행가액, 발행이자율 결정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을 발행시 전환가액,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교환가액 등에 대하여는 산정?결정방법만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 가능, 또한 회사채를 발행시에도 발행가액,발행이자율에 대하여는 산정 또는 결정방법만을 기재한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발행가액등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신고서 제출	발행공시규정 제2-12조	금융위		재무관리팀
21. 주식관련사채(CB,BW,EB,DR)권 행사가액 변경, 확정 신주인수권행사가액, 전환가격 또는 교환가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	상장규정 제68조②	거래소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22. 주식관련사채(CB,BW,EB,DR)권 행사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교환청구권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동 권리의 행사보고서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다만, 신주발행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상장규정 제68조①	거래소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23. 상장채권 기타사항 기발행채무증권의 중도상환의 결정이 있을 때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	상장규정 제69조 상장규정세칙 제38조	거래소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24. 주식 액면분할,액면병합 「상법」 제329조의2 및 제440조에 따른 주식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규정 제7조①2가(4)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25. 이익소각 주식의 이익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규정 제7조①2가(2)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계속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18 / 36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26. 변경상장 상장주권의 종목, 종류,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상장규정 제49조	거래소		재무관리팀
27. 유가증권관련 사고발생(분실, 도난, 위조, 변조 등) 사고증권(분실, 도난 또는 멸실 등의 사유로 그 점유를 상실하였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통지(거래소에의 통지는 위조 또는 변조된 증권의 경우에 한함,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한 통지가 가능)	상장규정 제70조	거래소 예탁원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28. 어음위변조 사실 발생 발행한 어음이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한 때	공시규정 제7조①2가(9)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29. 주권 상장폐지 결정 해당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폐지 하기로 결정한 때	공시규정 제7조①2가(8)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30. 해외증권시장에의 주권상장,폐지 등 관련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의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미 상장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1)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한 결정이 있을 때 및 해당 주권등을 상장한 때 (2)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후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공시하거나 보고서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제출한 때. 다만, 국내 증권관계법령 및 이 편에 따라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제출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3)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그 밖의 조치를 받은 때 및 상장폐지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2가(7)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31. 해외증권시장에의 주권상장,폐지 등 관련 주요사항보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일 공시할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대표이사 및 제출업무 담당 이사의 서명 필요)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금융위	신고 기간	재무관리팀
32. 유가증권에 관한 중요결정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 이익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의, 결정이 있을 때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	상장규정 제55조제7호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19 / 36


(3) 자기주식,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 자기주식 취득,처분 법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포함한다),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외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규정 제7조①2가(3)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2. 자기주식취득 주요사항보고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거래소 수시공시와는 별도로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를 제출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제5-1조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3.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취득결과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	발행공시규정 제5-8조	금융위	취득완료 또는 취득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재무관리팀
4. 자기주식처분 주요사항보고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거래소 수시공시와는 별도로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를 제출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제5-1조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5.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자기주식의 처분을 완료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분결과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보고서의 제출 생략 가능)	발행공시규정 제5-9조	금강위	처분완료 또는 처분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재무관리팀
6.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체결 주요사항보고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거래소 수시공시와는 별도로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를 제출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제5-2조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7. 신탁계약등에 의한 취득상황 보고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권상장법인인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	발행공시규정 제5-10조	금융위	신탁계약체결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	재무관리팀
8.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해지 주요사항보고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해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거래소 수시공시와는 별도로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를 제출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제5-2조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9. 신탁계약등해지결과 보고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때에는 해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	발행공시규정 제5-10조	금융위	해지결의 후 5일 이내	재무관리팀

계속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20 / 36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 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0. 자기주식 1일 주문수량등(취득,처분) 매수,매도주문일 전일의 장 종료 후 즉시 위탁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1일 매수,매도주문수량등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해야 함	발행공시규정 제5-4조 내지 제5-7조, 제5-9조	거래소	매수,매도주문 전일까지	재무관리팀
11. 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사실통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	발행공시규정 제5-11도	신탁회사 자산운용사 투자회사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1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부여취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부여취소 등을 하기로 결정이 있을 때	공시규정 제7조①2가(5)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1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을 부여한 경우에는 거래소의 수시공시와는 별도로 금융위에 부여사실을 신고해야 함(주주총회결의시 또는 이사회결의시)	자통법 제165조의17 자통법시행령제176조 의18	금융위	사유발생시	재무관리팀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21 / 36


(4) 투자활동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 신규시설투자,시설증설,별도공장신설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은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규정 7조①2나(1)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경영지원팀
2. 유형자산 취득,처분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은 100분의 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법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또는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해당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에 의한 취득 및 처분을 포함]이 있을 때	공시규정 제7조①2나(2)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경영지원팀
3. 타법인 주식,출자증권의 취득,처분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은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 다만,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법률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공개매수신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신고 (2)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처분(담보권 등 권리실행에 의한 출자,출자지분 처분을 포함)	공시규정 제7조①2나(3)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4. 출자비상장법인의 부도,회생절차,해산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은 1,000분의 25) 이상을 출자(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포함)의 부도,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발생,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2나(4)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5. 자원개발 투자,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공시규정 제28조 공시규정세칙 제8조제2호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재무관리팀
6.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회사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신규사업의 추진, 신시장의 개척, 주력업종의 변경, 회사조직의 변경, 신제품의 생산, 국내외 법인과과의 전략적 제휴, 신기술의 개발, 기존 사업의 변경(중단, 폐업, 매각 등)	공시규정 제15조①1	거래소	공정공시정보 제공 전까지	재무관리팀
7. 특허권 취득,양수,양도	공시규정 제28조 공시규정세칙 제8조제3호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연구소

계속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22 / 36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8. 기술도입,이전,제휴	공시규정 제28조 공시규정세칙 제8조제1호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영업팀 생산팀, 연구소
9.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주식취득 자본시장통합법 제167조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에 그 승인을 신청	자통법 제167조 발행공시규정 제3-16조 제3-1 7조	금융위	사유발생시	재무관리팀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23 / 36


(5) 채권,채무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 단기차입금 증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은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내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	공시규정 제7조①2다(1)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2. 채무인수,채무면제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은 1,000분의 25) 이상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한 때	공시규정 제7조①2다(2)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3. 담보제공,채무보증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은 1,000분의 2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담보 또는 채무보증은 제외). 이 경우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잔액을 함께 신고	공시규정 제7조①2다(3)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4. 담보제공,채무보증법인의 부도,회생절차,해산 채무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의 부도,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발생, 회생절차개시신청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2다(4)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5. 사채권에 대한 원리금미지급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은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금액을 기준)	공시규정 제7조①2다(5)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6. 단기차입금 감소	공시규정 제28조 공시규정세칙 제8조제4호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재무관리팀
7. 재산증여,수증	공시규정 제28조 공시규정세칙 제8조제8호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재무관리팀
8. 채무면제 이익발생	공시규정 제28조 공시규정세칙 제8조제6호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재무관리팀
9. 금전 또는 유가증권대여	공시규정 제28조 공시규정세칙제8조제1호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재무관리팀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24 / 36

(6) 손익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 재해발생 천재, 지변, 전시, 사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은 1,000분의 25) 이상의 재해(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발생한 때	공시규정 제7조①2라(1)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경영지원팀
2. 벌금, 과태료, 추정금, 과징금 등 부과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은 1,000분의 25) 이상의 벌금, 과태료, 추정금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2라(2)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경영지원팀 재무관리팀
3. 횡령, 배임사고 발생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은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2라(3)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4. 파생상품거래 손실발생 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하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에 따른 높은 위험 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은 1,000분의 25) 이상의 손실(미실현분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을 상계함	공시규정 제7조①2라(4)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5.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공시규정 제28조 공시규정세칙 제8조제5호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재무관리팀
6.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향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시규정 제15조①2	거래소	공정공시정보 제공 전까지	공시전 외부제공부서
7.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보고서 등의 당해 사업연도, 반기 및 분기의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의 영업실적(월별실적도 포함)	공시규정 제15조①3	거래소	공정공시정보 제공 전까지	공시전 외부제공부서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25 / 36


(7)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보고처	신고기간	소관부서
1.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증가, 감소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은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사실이나 결정이 있을 때, 이 경우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 공고하기 이전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항목 중 한 항목 이상에 해당되어 신고하는 경우 다른 항목 및 자산, 부채, 자본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	공시규정 제7조①2마(3)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2. 주식배당 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규정 제7조①2마(4)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3. 현금배당(결산, 분기, 중간) 현금배당(분기배당, 중간배당 포함)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및 중간배당(분기배당 포함)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기준일 포함)을 결정할 때, 이 경우 해당 배당신고는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하며 액면배당률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함	공시규정 제7조①2마(5)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4.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외감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이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신고 (1)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 (전액자본잠식은 별도표시) (3)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공시규정 제7조①2마(1)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5. 반기검토보고서상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회계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공시규정 제7조①2마(2)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6. 재무제표제출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2주간 이내에 증선위에 제출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가 감사인이 증선위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외감법 제8조② 외감법시행령 제7조	증선위	정기주총 후 2주간 이내	재무관리팀
7. 회계처리기준 위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1항에 따라 증선위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와 그 결과가 확인된 때 (2)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그 결과가 확인된 때. 다만, (1)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시규정 제7조①2마(6)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계속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26 / 36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보고처	신고기간	소관부서
8. 감사인 선임,변경 감사인을 선임,변경선임 또는 선정할 때	외감법 제4조의4 외감법시행령 제4조의3	증선위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재무관리팀
9. 감사인 사정에 의한 감사인 교체 감사인사정에 의한 교체시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가 기재된 서류 제출	외부감사회계규정 제11조	증선위		재무관리팀
10. 감사인 해임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한 때	외감법 제4조의2	증선위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11. 감사인 의견진술 외감법 제4조의2에 의하여 해임된 감사인이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한 경우	외감법 제4조의5 외감법시행령 제4조의5	증선위		재무관리팀
12. 감사인지정 관련자료 다음 각 호의 지정관련 자료제출, 다만,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한 경우는 제외 (1)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 현황과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자료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2)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이상인 경우에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의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외부감사회계규정 제18조	증선위	정기주총 후 2주간 이내	재무관리팀
13. 감사인지정요건해소 관련서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정요건 해소관련서류 제출	외부감사회계규정 제12조	증선위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14. 결합재무제표감사계약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통보를 받은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내용을 보고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결합재무제표가 폐지됨)	외감법시행령 제4조의3	증선위		재무관리팀
15. 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 기업진단 제외신청서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결합재무제표가 폐지됨.	외부감사 회계규정 제3조	증선위	매년 4월말까지	재무관리팀
16. 결합대상계열회사 변동보고서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결합재무제표가 폐지됨.	외부감사 회계규정 제5조	증선위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재무관리팀
17. 외부감사관련 기타사항 당해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아야 할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첨부?신고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때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때 (4)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예정인 때 (5) 상호, 결산기, 주소지 등을 변경한 때	외부감사회계규정 제19조	증선위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27 / 36


(8) 기업조직변경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 영업양도,양수,임대, 경영위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규정 제7조①3가(5)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2.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규정 제7조①3가(6)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3. 합병 주요사항보고 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거래소 수시공시와는 별도로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를 제출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제5-2조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4. 합병종료보고서 합병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종료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 (다만,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발행공시규정 제5-15조	금융위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5. 분할(분할합병) 주요사항보고 회사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거래소 수시공시와는 별도로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회사 분할(분할합병) 결정)를 제출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제5-2조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6. 분할(합병)종료보고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분할(분할합병)종료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 (다만,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발행공시규정 제5-15조	금융위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7. 영업양수도 주요사항보고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거래소 수시공시와는 별도로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영업양수도 결정)를 제출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제5-2조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8. 영업양수도 종료보고서 등기 등 사실상 영업양수?양도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양수도종료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 (다만,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발행공시규정 제5-15조	금융위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9. 자산양수도 주요사항보고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거래소 수시공시와는 별도로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를 제출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제5-2조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10. 자산양수도 종료보고서 등기 등 사실상 영업양수?양도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업양수도종료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 (다만,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발행공시규정 제5-15조	금융위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계속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28 / 36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2관 또는 제3관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규정 제7조①3가(4)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12. 주식교환,이전 주요사항보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거래소 수시공시와는 별도로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결정)를 제출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제5-2조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13. 주식교환,이전종료보고서 주식교환을 한 날 또는 주식이전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식교환,이전종료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 (다만,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발행공시규정 제5-15조	금융위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14. 주식매수청구가액 결정 주식매수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주식의 종류 및 수, 매수가격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매수가격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	상장규정 제56조	거래소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15. 합병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이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사실	공시규정 제28조 공시규정세칙제8조제10호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재무관리팀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29 / 36

(9) 기업지배구조 및 자회사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 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 최대주주 변경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3가(1)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2. 계열회사, 주요주주변경	공시규정 제28조 공시규정세칙제8조제14호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재무관리팀
3. 사외이사 선임, 해임, 중도퇴임 사외이사 선임, 해임, 중도퇴임은 거래소 수시공시와는 별도로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임 (선,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시, 사임등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시)	자통법 제165조의17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4. 사외이사 및 감사의 중도퇴임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때	공시규정 제7조①3가(2)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5.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지주회사는 자회사(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에 한함)의 수시공시사항을 사유발생 익일공시(부도,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발생, 회생절차개시신청등은 당일). 또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자회사의 부도,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발생, 회생절차개시신청등은 사유발생 익일까지 거래소에 신고	공시규정 제8조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6. 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 지주회사의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자회사(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 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거래소에 신고	공시규정 제16조	거래소	공정공시정보 제공 전까지	재무관리팀
7.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탈퇴 지주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새로이 편입 또는 탈퇴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3가(3)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30 / 36


(10) 법인존립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 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금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3나(1)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2. 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금지 주요사항보고 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일 공시할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대표이사 및 제출업무 담당 이사의 서명 필요)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3.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회생절차 개시,종결,폐지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2) 파산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때	공시규정 제7조①3나(2)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4. 회생절차 개시 신청등 주요사항보고 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일 공시할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대표이사 및 제출업무 담당 이사의 서명 필요)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5. 해산사유 발생 「상법」 제517조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상법」 제227조제4호 및 제517조제1호의2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시규정 제7조①3나(3)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6. 해산사유 발생 주요사항보고 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일 공시할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대표이사 및 제출업무 담당 이사의 서명 필요)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7. 은행경영관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거래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공동관리를 개시?중단 또는 해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때	공시규정 제7조①3나(4)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8. 주채권은행 등의 회생절차개시신청등 요구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생절차,해산,청산 또는 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	공시규정 제7조①3나(6)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9. 은행경영관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주요사항보고 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일 공시할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대표이사 및 제출업무 담당 이사의 서명 필요)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계속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31 / 36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 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0. 소송의 제기·판결,결정 등 해당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다만, (4)의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 결정, 소취하(상소취하를 포함한다),화해,청구포기(상소권포기를 포함한다)의 허가신청,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을 확인한 때 (1)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의 변경 및 그 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에 관한 소송 (2)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소송 등 (3)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의 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분쟁 소송 (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	공시규정 제7조①3다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11. 소송등의 제기,판결,결정 주요사항보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일 공시할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대표이사 및 제출업무 담당 이사의 서명 필요)	자통법 제161조 자통법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	금융위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12.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공시규정 제7조①3나(5)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재무관리팀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32 / 36


(11) 주주총회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 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상장규정 제55조제3호	거래소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2. 주주총회 소집결의, 결과등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을 때, 이 경우 사업목적 변경,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감사의 선임,해임,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명기	공시규정 제7조①3라 상장규정 제55조제1호	거래소	사유발생 당일까지	재무관리팀
3. 주주총회소집통지,광고사항 소액주주(1% 미만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2개 이상의 신문광고(각2회) 또는 전자적광고(금강원, 거래소공시)로 같음(광고사항 중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강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를 통해 공고하면 소집통지 또는 신문공고를 같음) (1) 비상임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 (2)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3)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상법시행령 제10조	금융위 거래소	소집통지, 공고와 동시에	재무관리팀
4. 주주총회결과	상장규정 제55조제4호	거래소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33 / 36


(12) 지분변동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①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②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선위와 거래소에 보고	자통법 제173조 자통법시행령 제200조	증선위 거래소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재무관리팀 (임원 및 주요주주의 거래내역 재무관리팀에 송부 필요)
2.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1)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 그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 (2) 보유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	자통법 제147조 자통법시행령 제153조 제154조 발행공시규 정 제3-10조 내지 제3-14조	금융위 거래소	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	재무관리팀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거래내역 재무관리팀에 송부 필요)
3.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 제출	상장규정 제60조	거래소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거래내역 재무관리팀에 송부 필요)
4.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대량취득보고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공공적법인의 발행 주식을 취득한 자는 취득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에 대량주식취득보고서를 제출	발행공시규정 제3-18조 제3-19조	금융위		재무관리팀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34 / 36

(13) 공개매수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사항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 법 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 공개매수신고서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 그 공개매수공고일에 제출	자통법 제134조, 제146조 발행공시규정 제3-2조	금융위 거래소	공개매수공고일	재무관리팀
2. 공개매수설명서 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우취급자를 포함)는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설명서를 작성하여 공개매수공고일에 제출	자통법 제137조 자통법시행령 제148조 자통법시행규칙 제16조	금융위 거래소	공개매수공고일	재무관리팀
3. 공개매수철회신고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고	자통법 제139조 자통법시행령 제150조	금융위 거래소	공개매수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관리팀
4. 공개매수결과보고서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발행인은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고	자통법 제143조 발행공시규정 제3-8조	금융위 거래소	종료 후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5.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공개매수 대상 주식등의 발행인은 공개매수에 대하여 찬성, 반대, 중립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자통법 제138조 자통법시행령 제149조	금융위 거래소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6.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상장주권(관련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의결권권유자)는 그 권유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해야하며,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자통법 제152조, 제153조 자통법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발행공시규 정 제3-15조	금융위 거래소	권유행위 5일 전까지	재무관리팀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35 / 36


(14) 기타 (단기매매차익, 공시책임자 신고등)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 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 대표이사,본점소재지 변경	상장규정 제55조제5호	거래소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2. 명의개서대행계약 변경,갱신	상장규정 제58조	거래소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3.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신고 상장법인이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공시책임자가 비등기임원인 경우 당해 회사의 「공시 권한 위임장」을 추가 첨부함) 거래소에 등록	공시규정 제88조	거래소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4. 기업설명회 개최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거래소에 통보	공시규정 제41조	거래소	개최 전까지	재무관리팀
5. 단기매매차익발생 증권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 직원, 주요주주]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소유자 포함)의 대위청구에 관한 사항	자통법 제172조 자통법시행령 제197조	자사 홈페이지	사유발생시 2년간 또는 반환받은 때까지	재무관리팀
6. 내부정보관리규정 공표 상장회사협의회가 정하는 「상장회사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	공시규정 제42조	자사 홈페이지	2009.9.1부터의 무시행	재무관리팀
7. 신고비율미만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비율에 미달하는 사항이라도 회사가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공시규정세칙제8조제16호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재무관리팀
8. 수시공시무 관련사항 이사회 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사항과 신고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항	공시규정 제15조①4	거래소	공정공시정보 제공 전까지	재무관리팀
9.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변경, 해지	상장규정 제55조제6호	거래소	지체없이	재무관리팀


계속

	공시정보관리규정	표준번호	SJM-C-6000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	개정번호	0
		페이지	36 / 36

신고 및 보고 사항	관계법규	신고 보고처	신고 기간	소관부서
10. 금융기관이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요구 또는 명령을 받거나 경영개선협약체결등 조치를 받은 사실	공시규정 제28조 공시규정세칙제8조제13호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재무관리팀
11.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사실	공시규정 제28조 공시규정세칙제8조제12호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재무관리팀
12. 기타 사항외의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공시규정 제28조 공시규정세칙제8조제15호	거래소	사유발생 익일까지 (자율공시)	재무관리팀

	중요정보 발생 통지서	발생부서	담당	팀장	본부장
				전 결	

발생일시	년 월 일 / 시 분		발생부서	
통지일시 (공시부서)	년 월 일 / 시 분			
발생내용	*부표2 수시 및 기타 공시사항에 해당사항 발생시 해당사항 기재			
세부내용 기 술	*해당사항의 세부내용 기재(해당사항에 따라 재무관리팀에 문의)			
첨부문서명	*중요정보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재 / 첨부 1. 2. 3.			
공시부서	접수일시	년 월 일 / 시 분		본부장
	확인의견 및 조치내용			팀장
				담당

	중요정보 외부제공 통지서	제공부서	담당	팀장	본부장
				전결	

제공일시	년 월 일 / 시 분	제공부서	
통지일시 (공시부서)	년 월 일 / 시 분	제공자	
중요정보 제공내용	*부표2의 수시공시 및 기타공시사항의 외부제공시 세부 제공내용 기재		
중요정보 자료요청자 에 관한 사항	1. 성 명 (회 사 명)		
	1.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소 속 회 사 및 소 속 부 서		
	4. 자료요청 목적		
	5. 기 타 사 항		
공시부서	접수일시	년 월 일 / 시 분	본부장
	확인의견 및 조치내용		팀장
			담당